H - 3 - 2010

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실시 지침

2010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건형
- o 제·개정 경과
  - 2010년 6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 - KOSHA Code H-17-2009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. 「폐활량검사 및 판정에 관한 지침」
  - European Standard prEN13826. Peak Flow Meters. London, British Standards Institute, 2000
  - Miller MR, Hankinson J; ATS/ERS Task Force. Standardisation of spirometry. Eur Respir
    J. 2005 Aug; 26(2):319–38
  - ClementClarke. How to disinfect the Mini Wright Standard Peak Flow Meter, the AFS
    Low. Range Mini Peak Flow meter and the Mini-Wright Digital, Issue 5 May 2007
  - Moore VC, Jaakkola MS. A Systematic Review of Serial Peak Expiratory Flow
    Measurements in the Diagnosis of Occupational Asthma. Annals of Respiratory Medicine.
    2010;1:31-44
  - Quanjer PH, Lebowitz MD, Gregg I, Miller MR. Peak expiratory flow: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a Working Party of the European Respiratory Society. Eur Respir J Suppl. 1997 Feb;24:2S-8S
  - Moscato G, Godnic-Cvar J. Statement on self-monitoring of peak expiratory flows in the investigation of occupational asthma. Eur Respir J. 1995 Sep;8(9):1605-10
- o 관련법령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4항 관련 별표 13(특수건강진단·배치전건강 진단·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)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(전화 032-5100-826, FAX 032-518-0862)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

공표일자 : 2010년 8월 3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실시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3조, 동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00조 제4항 및 규칙 별표 13에서 제시하는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실시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규칙 별표 13에서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을 수행하는 검사자가 그 검 사를 실시하는 때에 적용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최대호기량계(Peak flow meter)"란 소형의 휴대용 형태로, 폐의 최대호기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.
  - (나) "최대호기유속(Peak expiratory flow rate, PEFR)"이란 최대 흡기상태(총폐활량)에서 최대의 힘으로 불어 낼 때에 만들어지는 호기 속도의 최고치를 말한다.
  - (라) "Oasys(Occupational Asthma expert SYStem) 프로그램"이란 직업성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검사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.

H - 3 - 2010

- (마) "검사 일지"란 검사 대상자가 최대호기량계를 이용해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 속 측정 검사 결과를 일자별, 시간별로 기록하는 양식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적용 및 금기 대상

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검사의 적용 대상 및 금기 대상은 아래와 같다.

#### 4.1 적용 대상

- (1) 기관지 과민성(예, 기관지 천식)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(2) 작업 환경이 기관지 과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(3) 천식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평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

#### 4.2 금기 대상

(1)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

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없다.

- (2) 검사에 주의해야 할 대상
- (가) 최근 2주 내지 6주 이내에 상기도 또는 하기도 감염자
- (나) 검사 순응도가 떨어지는 검사대상자

H - 3 - 2010

(다) 기타 이유로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자

## 5. 검사자 자격

- 이 지침에서 제안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.
- (가)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검사 지침들을 숙달하고 검사절차에 대한 이 해가 충분한 자
- (나) 최대호기량계 사용에 능숙한 자
- (다)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의 검정, 유지, 보수, 세 적 등의 장비 관리가 가능한 자

# 6. 검사의 준비

6.1 검사 전 준비 사항

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.

- (1) 검사의 목적 및 방법
- (2) 검사 후 결과를 검사 일지에 기록하는 방법
- 6.2 최대호기량계의 검정
  - (1) 기기 보정(Calibration)
  - (가) 제조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휴대용 최대호기량 계는 일일 보정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.

H - 3 - 2010

- (나) 결과값이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,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보정을 받도록 한다.
- (2) 기류 저항(Resistance to flow)

최대호기량계의 측정 범위 내에서의 기류 저항은  $0.35~\mathrm{kPa}/\ell/\mathrm{s}(0.006~\mathrm{kPa}/\ell/\mathrm{min})$ 를 넘지 않아야 한다.

## (3) 재현성

- (가) 동일 기기 내 재현성(Intra-instrument repeatability)은 5% 이내이거나 10 ℓ /min 이하여야 한다.
- (나) 동종 기기 간 재현성(Inter-device reproducibility)은 10% 이내이거나 20 ℓ /min 이하여야 한다.

### 6.3 위생 및 감염에 대한 준비

- (1) 최대호기량계는 1인 1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부득이하게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.
  - (가) 마우스피스 등의 소모품은 일회용으로 준비한다.
  - (나)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소독하여 준비한다.
  - (다) 일회용 필터(Disposable bacterial filters)를 준비하여 감염의 전파를 예방한다.
  - (라) 검사 전에 흉부방사선사진과 임상병리검사 등을 참조하여 감염의 가능성을 예 방한다.

H - 3 - 2010

### 6.4 최대호기량계 세정

- (1) 가정에서 최대호기량계 세정
- (가) 최대호기량계로부터 마우스피스를 분리하여 따뜻한 물에 담가 2-3분간(최대 5분) 흔들어 씻는다. 이때 세정을 위하여 솔이나 천 등 기타 물질을 호기량계 내부로 밀어 넣지 않는다. 이 경우 세정 과정에서 기기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.
- (나) 깨끗한 물을 받아 헹구고 가볍게 흔들어 물을 털어낸 후 자연상태로 말린다.
- (다) 한 달에 한 번 이상 세척을 한다.
- (2) 병·의원에서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호기량계 세정

제조회사에서 지시하는 세정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.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.

- (가) 제조회사가 권장하는 세정액을 적절한 용기에 충분히 담아 최대호기량계로 부터 마우스피스를 분리하여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. 최대호기량계 내부의 공기는 모두 빠져나가도록 흔들어 준다. 이때 세정을 위하여 솔이나 천 등 기타 물질을 호기량계 내부로 밀어 넣지 않는다. 이 경우 세정 과정에서 기기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.
- (나) 깨끗한 물을 받아 헹구고 가볍게 흔들어 물을 털어낸 후 자연히 말린다. 이 때 천이나 타올을 이용해 호기량계 내부로 밀어 넣지 않는다.
- (다) 제조회사가 권장하는 살균 용액을 적절한 용기에 충분히 담아 최대호기량계로 를 완전히 잠기도록 한 다. 최대호기량계 내부의 공기는 모두 빠져나가도록 흔들어 준다. 이 후 제조회사의 권고 시간 동안 둔다.

H - 3 - 2010

(라) 깨끗한 물을 받아 다시 헹구고 가볍게 흔들어 물을 털어낸 후 자연 상태로 말린다.

## 7.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검사의 순서 및 방법

#### 7.1 기본 검사 순서

- (1) 마우스피스를 최대호기량계에 연결한다.
- (2) 표시를 영점에 맞춘다.
- (3) 최대호기량계를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쥔다.
- (4) 똑바로 서거나 가슴을 바로 펴서 앉는다.
- (5)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신다.
- (6) 마우스피스는 이로 살짝 물고 입술로 꽉 조여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.
- (7) 망설이지 말고 한 번에 힘껏 세게 불어내도록 한다. 이 때 마우스피스 주위로 바람이 세지 않아야 한다.
- (8) 수치를 적는다. 검사가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 (2)부터 다시 반복한다.
- (9) (2)부터 (8)까지를 총 3회 반복한다. 이 때 3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.

#### 7.2 검사 횟수 및 시기

- (1) 기관지과민성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 횟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하루 중 최소 4회 이상, 최소 2-3주간 연속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H - 3 - 2010

- (나) 검사 시기 중 적어도 2회는 기상 직후와 늦은 오후(혹은 초저녁) 시간대가 포 함되어야 한다.
- (2) Oasys(Occupational Asthma expert SYStem) 프로그램 구동 시 요구되는 필요 한 최소한의 검사 횟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하루 중 최소 4회 이상
  - (나) 연속근무일이 3일 이상
  - (다) 3개 이상의 근무상태(duty)(대략 3주간 연속)(예시 1 및 예시 2 참조)
    - 【예시 1】근무기간(on-duty)-휴무기간(off-duty)-근무기간(on-duty)
    - 【예시 2】휴무기간(off-duty)-근무기간(on-duty)-휴무기간(off-duty)
- (3) 검사 시기는 일중 변동이 있으므로 동일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.

#### 7.3 검사 조건

- (1) 해당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.
- (2) 기기별로 검사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의 실시한 검사 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기관지확장제를 써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, 투약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속효성의  $\beta_2$  작용제 흡입 시 적어도 투약 후 15-20분이 지난 후 검사를 실시한다.

# 8. 적합성과 재현성의 판단기준

8.1 적합성의 기준

H - 3 - 2010

휴대용 최대호기량계를 이용한 검사 후, 적합성이 있는 검사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.

- (1) 마우스피스를 입술로 적절히 죄어 공기가 새지 않을 것
- (2) 망설임 없이 단번에 불어 낼 것
- (3) 공기를 불 때 침을 뱉는 식이나, 기침을 하거나 또는 혀가 입구를 막는 일이 없을 것
- (4) 자세는 서거나 바로 앉은 상태로 가슴을 펴고 목의 자세는 굽힘이 없이 중립을 유지한 자세일 것
- (5) 검사의 적합성은 검사대상자가 (1)-(4)에 따라 판단한다.

### 8.2 재현성의 기준

재현성이 있는 검사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.

- (1) 적합하게 얻은 세 검사값 중에서 가장 큰 최대호기유속(PEFR)과 그 다음으로 큰 최대호기유속(PEFR)과의 차이가 40 ℓ/min 이내이어야 한다.
- (2) (1)을 만족하지 못한 재현성이 만족되지 않는 검사일 경우 추가로 2회를 더 불어 재현성을 살펴본다.

### 9 검사 일지 작성

#### 9.1 작성 요령

검사 일지는 검사대상자가 직접 작성한다.

### 9.2 검사 일지 구성

H - 3 - 2010

검사자는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를 검사 일지에 기록하도록 한다.

- (1) 검사대상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나이, 키, 몸무게
- (2) 일자별 시간별로 측정된 검사 결과치
- (3) 각 검사 당시 근무 현황
- (4) 각 검사 당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여부

# 10. 결과의 작성

### 10.1 작성 요령

- (1) 결과는 검사자가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 일지를 받아 작성한다.
- (2) 결과 내의 검사 결과 도표는 기관별로 각기 다른 기준 하에 작성할 수 있다.
- (3) 검사 결과 도표를 통한 기관지과민성 여부의 판단은 건강진단 의사가 수행한다.

#### 10.2 결과의 구성

결과 표기는 다음 각 호를 기록하도록 한다.

- (1) 검사대상자의 이름, 주소, 연락처
- (2) 검사대상자의 성별, 나이, 키, 몸무게,
- (3) 검사 기기명
- (4) 측정 일자

H - 3 - 2010

- (5) 검사 결과 도표
- (6) 판정 소견
- (7) 결과 작성 일자
- (8) 판정 의사명 및 서명

# 11. 결과의 해석

11.1 최대호기유속측정값 변동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

다음의 경우,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.

- (1) 근무 중 최대호기유속측정 평균값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의 최대호기유속측정 평균값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때(일일 변이(Day-to-day variability))
- (2) 일중 변동이 근무일 중일 때가 휴무일 중일 때보다 더 크거나 일중 변동값 (Diurnal variability)이 20% 이상 더 클 때
- 11.2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의 업무관련성 유형

업무와 관련된 최대호기유속측정값 변동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.

(1)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의 즉각적인 감소

근무 시작 1시간 이내 혹은 특정 업무에 노출되자마자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이 감소

(2)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의 지연된 감소

근무 후 시간이 한참 지나거나 퇴근 후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이 감소

H - 3 - 2010

(3)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의 근무주간에 걸친 점진적인 누적 감소

근무일자가 지나면서 근무 중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이 더 많이 감소

(4)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의 근무주간에 걸친 비(非)누적형 감소

근무일자가 지나면서 근무 중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이 유사한 수준으로 반복하여 감 소

(5) 노출 후 업무상 노출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는 경우

노출 첫 날 심대한 최대호기유속측정값 감소가 관찰된 후, 근무일자가 지나면서 그 정도가 점차 덜하여 지는 경우

- (6) 노출 중지 후 최대호기유속측정값의 회복 유형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.
- (가) 노출이 중지된 후 수 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
- (나) 노출이 중지된 후 수 일에 걸쳐 회복
- 11.3 일중 변동값(Diurnal variability) 계산

일중 변동값은 아래 식(1)과 같다.

$$D.V. = \frac{MaxPEF - MinPEF}{MeanPEF}$$
 (1)

여기에서

D.V. : 일중 변동값

Max PEF: 일중 최대호기유속측정값들의 최고값 Min PEF: 일중 최대호기유속측정값들의 최저값 Mean PEF: 일중 최대호기유속측정값들의 평균값 KOSHA GUIDE H - 3 - 2010

# 12. 검사 결과 기록의 보존

검사 결과 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(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)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